성희롱 예방 지침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 일　　시 : 2025. 08. 20. (18:30~19:00)
● 진행방법 : 카톡 단체 채팅방 이용한 비대면 교육
● 대　　상 : 제천시방문요양센터 전 직원

제천시방문요양센터

□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1.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 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 됩니다. (어린이·장애인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의 대상**
   -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대상이지만 남녀 모두 해당됨.

3. **성폭력의 유형**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폭력 예방지침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성폭력은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범죄 행위이다.
나.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 남자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2. 성폭력 발생 예방요령

가.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 한다.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 동료 및 수급자들과의 음담패설을 삼간다.

라.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마. 평소 수급자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성폭력 대응지침

1. 성폭력 대처방안

[기관에서의 대처방법]

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한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한다.

마.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 되었을 때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성폭력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바. 성폭력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한다.

[개인의 대처 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한다.

1) 서비스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2)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3)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둔다.

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 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라.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성폭력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계획을 명확히 설명 한다.

마. 음담패설을 삼간다.

바.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 한다.

사.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직접표현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한다,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서비스 중 수급자(노인)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

라.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마. 외부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등에 상담

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숙지

사. 음담패설 등 자제

[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

가.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나. 옷이 너무 꽉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라.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